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규정

□ 제정 : 2020.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제4항, 학칙 제31조의 11에 근거하여 수원과학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방학 기간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외대학에서 일정 기간의 어학연수를 한 경우
7.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및 국내·외 인턴십을 수행한 경우
8. 본 대학이 학점을 인정하기로 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② 학점인정에 있어 소관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학점인정심을 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단, 교학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필요한 경우 기타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임시위원: 비정규 학점인정 과정 수행 주관부서 처장 또는 관련 학과의 학과장
2. 외부위원: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0-46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규정

2. 위원회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